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861

발의연월일: 2023. 9. 27.

발 의 자: 안호영 · 신정훈 · 소병훈

민병덕 · 김승남 · 고영인

김윤덕 • 주철현 • 김정호

윤준병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,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 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.

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"인한 피해"를 "인한 피해,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	나
폭발 • 교통사고(항공사고	
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	
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	
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	
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	
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	
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	
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	
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	
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	
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	
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<u>인</u>	<u>্</u>
한 피해	한 피해, 원전 오염수 방

	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
	<u>해</u>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